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3236
----------	------

제출연월일 : 2016. 11. 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부지선정기구 등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법에 따라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원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안 제4조 및 제5조)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심층조사, 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등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함.
- 2)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사람 및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나.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하도록 함.

- 3) 부지선정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심층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후보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하도록 함.

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안 제15조 및 제16조)

- 1)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 또는 설치된 지역의 지원 기준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2)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함.

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안 제2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협의하여 해당 저장시설의 시설계획과 해당 시설을 건설하려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1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高準位)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와 유치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저장”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운반하여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사업자”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거나 처분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가. 중간저장시설: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 나. 처분시설: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인수·운반하였거나 중간저장시설에서 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 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이 설치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는 시설
7. “유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말한다.

가.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제4조(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2. 제1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3. 제1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5.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설치계획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7. 그 밖에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
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지선정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존속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부지선정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선정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기구의 설치 등) ① 부지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 사무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부지선정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보의 공개) 부지선정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

제1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 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일정 등 조사 개요
2. 조사의 절차
3. 조사 방법
4. 부지적합성 평가기준
5.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6.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
7.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부지선정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활동성 단층 등 지질적 특성과 인구밀집도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이하 “기본

조사”라 한다)를 위한 후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후보지역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3항제5호의 의견 수렴 방법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제공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부지선정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한다)를 위한 후보부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후보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① 부지선정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예정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처분시설의 지하환경과 유사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부지선정에 필요한 자료 조사, 처분시스템의 성능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선정되면 처분시설을 설계·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시설의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제15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3. 그 밖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만 해당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3. 관리사업자의 대표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제19조(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외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외에 설치된 관리시설에 저장·처분하거나 관리시설을 국외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외 저장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협의하여 그 저장시설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협의하여 그 저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제23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2.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의 직원
3.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 건설지역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